

중재신청사례에 나타난 권익침해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교수

1. 늘어나는 부수와 영향력

1980 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잡지들은 발행부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잡지사의 관점에서는 1964 년대 중반이후를 「제 2 차 신문잡지시대」로 부르고 있다. 1964 년 9 월 27 일에 창간된 「주간한국」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일간신문사들이 1968 년도부터 주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주간지 붐을 일으켰다. 「주간중앙」(1968. 8), 「선데이서울」(1968. 9), 「주간조선」(1968, 10) 「주간경향」(1988. 11), 「주간여성」(1969. 1), 「소년경향」(1969. 1) 등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이들 주간지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수반하여 많은 독자를 개발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잡지를 읽는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타나서 지금까지는 잡지를 읽지 않던 사람들을 독자로 끌어 들였다. 이러한 주간지들은 잡지형태로 발간되는 것도 있고, 신문형태의 것도 있어 잡지와 신문의 구분도 모호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락적인 내용과 저속한 화제거리들을 주로 다루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경영면에서는 수지가 맞는 사업이었다.

신문사에서 월간지 발행에 본격적으로 열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부터였다.

동아일보는 「주간한국」 창간과 거의 같은 때였던 1964 년 9 월에 「신동아」를 복간한데 이어 1967 년 11 월에는 일제시대의 「신가정」을 중간하는 형식으로 게재하여 「여성동아」를 창간했다. 이로부터 중앙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의 일간지가 다투어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의 종합일간지가 발행하는 잡지는 경향신문 4 종, 동아일보 5 종, 서울신문 3 종, 조선일보 5 종, 중앙일보 9 종, 한국일보 4 종 등이다. 이 가운데는 주간지와 종합월간지를 비롯하여 국민학생과 중고생상대 잡지 및 여성지, 그리고 계간전문지 등도 있다.

많은 부수가 나가는 것으로는 여성잡지와 종합월간지로서 종합지는 1980 년대 초반 이후에 부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신문사 발행잡지 외에도 여성잡지는 독립된 잡지사가 발행하는 것들도 많은데 호화판 인쇄와 고가의 제작비가 소요되므로 대량판매를 전제로 발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경쟁이 지나친 나머지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게 된다. 흥미본위, 자극적인 기사로 독자를 유혹하려는 경향에 빠지다 보니 과장 또는 허위기사가 실리게 되며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2. 선정적 보도태도

잡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이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1980 년대 대량판매를 위한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업무를 개시한 것이 1981년 3월 31일이었는데 매체별 중재처리통계를 보면 1985년까지는 매년 주간지와 월간지에 대한 중재신청건수가 전체 처리건수의 10%를 넘지 못했으나 1986년과 1987년에는 주간과 월간잡지가 전체 건수의 38%와 30%를 각각 차지하게 되었다. <표 참조>

이는 우리나라 주간지와 월간지가 근년에 무책임한 과당경쟁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처리한 자료를 참고로 할 수가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처리 내용

신문윤리위원회는 일간신문만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잡지의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과 다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침해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신문기사로 인한 피해자의 제소는 1961년 9월부터 1981년 8월말까지 20년 동안 약 206건(신문사별로 계산하면 214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문의 허위 보도, 오보 등으로 제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은 186건이었다.

이 186건은 20년간 전체 제소사건 206건의 90%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제소사건이 「명예훼손」과 관련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186건 가운데 50%인 93건은 제소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제소건수 가운데 18건은 명예훼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단순오보 또는 과장보도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원회가 1981년 12월말에 집계 발표한 20년간의 실적에 의하면 자율심의한 결정내용별로는 인권침해가 가장 많아서 704건에 이른다. 이는 자율심의 결정의 42%나 되고 제소사건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이 39건의 40%나 된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원인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와 고의성은 없었지만 부주의 또는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이 그것이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란 봉역한 부녀자 또는 미성년 피의자의 주소, 성명, 사진 등을 공개한 사례를 들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언론의 제작과정에서 일어난 실수 또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오는 것이므로 크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견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중재사례

1) 인터뷰한 내용을 조작 또는 왜곡 보도한 사례

이러한 형태의 보도들은 특히 인터뷰기사에 흔히 나타나는데, 제일 흔한 것은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는 기사가 있다.

1987년 10월 18일자 모 신문사가 발행하는 A 주간지는 1976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에 있었던 B 여인과의 인터뷰기사라 하여 현장상황을 기사화했다. 『일문일답 독점공개, 박대통령 시해 궁정동 10.26 현장의 여인 B』이라는 표제의 이 기사는 6페이지에 걸치는 긴 기사였다.

중재신청을 한 B 여인은 A지의 어느 누구와도 보도내용에 관하여 일체 언급한 일이 없는데도 일문일답을 한 것처럼 모든 내용을 임의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게재했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다.

1986년 1월 모 여성월간지는 필리핀의 심령치료사인 준라보라는 사람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를 취재한 형식으로 『준라보에게 심령수술 받았다는 국내환자 직접 취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등장한 K 여사는 취재기자에게 심령수술에 관해서 이야기한 일이 없었다. 기자로부터 전화문의 받은 일은 있으나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거절하였을 뿐,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인터뷰 내용을 일부 조작해서 보도하는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피해자의 명예와 신뢰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됨은 물론이다.

2)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조작한 사례

1986년 5월 모 여성월간지는 『박근영 · 유청 이혼소문의 진상은 이렇다』라는 제하 기사를 6페이지에 걸쳐 실었는데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실과 전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작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이나 동의없이 사실무근으로 작성했거나 떠도는 소문만을 듣고 기사화한 것이었다.

1986년 7월 8일자 모 여성주간지는 『86 미스코리아 진 김지은 과거고백』이라는 제목으로 1986년도 미스코리아 진 김지은 양이 룸살롱 호스텔스로 종사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김지은 양은 이 기사가 유언비어를 추적 · 조작하고, 인터뷰한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윤색하여 김지은 양이 호스텔스로 종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날조했다는 것이다.

3) 수기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도

1986년 6월호 모 여성월간지는 『머리 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라는 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평소에 공부를 잘 하면서도 전체 1등의 압박, 주의의 기대와 자기 스스로의 욕구가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되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중 3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죽은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자살인지 실족사인지 분명하지 않고 기자와 면담하거나 수기를 쓴 일도 없는데 허위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1987년 6월호 모 여성월간지는 『박종철 군의 여자친구 C 양의 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고문으로 죽은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여자친구인 C 양이 입학식 날로부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박군과의 우정과 사랑을 담은 수기이다. 그러나 자유기고가인 조모씨가 박군의 평전을 쓴다 하여 C 양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내용을 임의대로, 흥미위주로 왜곡하고 C 양의 명의를 사용하여 C 양의 수기를 쓴 것처럼 보도했다.

위에서 살펴본 몇 건의 사례들은 흥미위주의 기사로 독자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제작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들이 발행하는 잡지가 이와같이 무책임하고 날조된 기사를 버젓이 게재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분쟁사건이 있을 때에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여 다른 한쪽을 불리하게 한 사례가 있다. 비슷한 경우로는 고소장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라고 단정보도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또는 사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표 매체유형 (1988. 12. 16 현재)

구분 연도	중앙지	지방지	통 신	중 양 방 송	지 방 방 송	주 간 신 문	월 간 신 문	주간지	월간지	기 타	계
1981년	27	7	4	2		2		2			44
1982년	16	3	2	10	3	3		9	4		50
1983년	34	13	5	3	1	6	1	6	2		71
1984년	20	7	1	9	1	5		5	6		54
1985년	25	16	6	1		5	1	4	1		59
1986년	13	8		3	2	4		9	10		49
1987년	16	4	3	4	1	4		7	7	7	47
1988년	24	12	1	1	3	5		1	6		53
계	175 (41%)	70 (16%)	22 (5%)	33 (8%)	11 (3%)	34 (8%)	2 (0.5%)	43 (10%)	36 (8%)	1 (0.2%)	427 (100%)

3. 늘어나는 침해사례

미국의 잡지학자인 피터슨(Theodore Peterson)은 잡지가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비해서 즉각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뒤떨어지지만 한 사람이 일생동안 어떤 잡지를 구독한다면 그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1950 년대에 읽은 신문기사는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그 당시 「학원」이나 「사상계」를 읽던 청소년과 성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때 읽은 글들을 기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잡지는 해설과 논평의 기능이 제 1 차적인 기능으로 강조되는 매체이다. 신문과 방송의 즉각적인 보도의 기능을 우선으로 삼고 새로운 사실을 추적하는 데 비해서 잡지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상황을 탐구하여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잡지들이 흥미위주로만 제작하려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잡지 제작자들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겠다.

우리 나라는 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가 잡지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잡지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고 무책임한 허위 기사를 써서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독자들을 속인다면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침해사례들은 주간지와 여성잡지에 국한된 것이 있다. 그러나 종합잡지들도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침해사례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은 기사들이 미확인 또는 과장 보도 되고 있는 것은 신문사가 발행하는 여성잡지와 주간지의 제작태도로 보아서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중재위원회에까지 신청이 되지 않는 침해사례가 더 많을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회청문회에 증거자료로 제시되었다가 크게 말썽이 일어났던 모 월간지의 가짜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은 비록 잡지 제작진의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성지 · 주간지 제작자세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19 세기 말에 창간되어 잡지사에 그 이름이 올라있는 「The Literary Digest」가 1936년 대통령 선거 때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적중하지 못하자 잡지의 명성이 떨어져서 마침내 폐간되고 만 것이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새로운 잡지의 등록이 용이해지고 발행이 자유로워졌으므로 잡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또한 독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다양화해지면서 새로운 잡지들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침해사례도 정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대,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석사, 런던대 정치학박사
- 독서신문 편집부장, 기자협회 편집실장, 관훈클럽 사무국장
- 저서: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한국언론사연구」, 「한국현대언론사론」, 「대한매일신보와 배설」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